

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(제23조 관련)

1. 표지



2. 제도법

가. 도형 표시

- 1)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(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: W)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$0.95 \times W$ 로 한다.
- 2)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(좌·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)의 간격은 $0.1 \times W$ 로 한다.
- 3)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$0.5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,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$0.7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.

나.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고,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다.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.

라. 표시도형 내부의 "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", "(KOREAN SEAFOOD GRAND MASTER)" 및 "KOREAN SEAFOOD GRAND MASTER"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, 하단의 "해양수산부"와 "MOF KOREA"의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.

마. 배색 비율은 녹색 C80 + Y100, 파란색 C100 + M70, 빨간색 M100 + Y100 + K10으로 한다.

바.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사. 표시도형은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3. 표시사항

가.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 지정번호

나.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 지정 분야(품명)

다.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의 성명